

1997. 3. .
제22회 임시회

시정질문에 대한
답 변 요 지 서

기 획 실 장

목 차

연번	질문의원	질 문 요 지	비 고
계	2명	2 건	
1	박장열	우록문화제를 계절별,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개최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할 용의는 ?	
2	임병현	사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시기 일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과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사업현황 및 향후대책은 ?	

답 변 요 지 서

질문의원	박 장 열	답변공무원	기 획 실 장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질문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륵문화제를 계절별,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개최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할 용의는?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답변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제행사는 현재 4월에 수안보온천제, 10월에 우륵문화제, 각 예술단체별 단위행사등 계절별로 수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○ 특히 우륵문화제 행사종목중 전국가야금경연대회는 이미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60여종목의 행사중 분리 필요성이 있거나 독립행사를 원할 경우 분리개최, 격년제개최 등을 협의하고 장차는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			

답 변 요 지 서

제22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

질문의원	임 병 헌	답변공무원	기 획 실 장
<p>□ 질문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시기 일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과 성립전집행이 가능한 사업현황 및 향후대책은 ? <p>□ 답변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·도비이고 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함 ○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이 국·도비이고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면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내용을 분석, 예산성립전집행을 실시하고 있음 ○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부담을 해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성립전집행을 할 수 없음 ○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제1회추경편성을 조기에 실시하고 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속히 집행할 예정임 ○ 현재 예산성립전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없음 <p>※ 농촌대형관정 개발사업은 국·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</p>			